

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전문위원 손윤목

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혁신도시관리본부를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직제조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□ 행정기구 조정 (안제5조)

- 직제 조정 : 혁신도시관리본부(국 단위, 한시)

→ 정부부지사 직속, 혁신도시관리본부(과 단위, 상시)

□ 분장사무 조정 (안제13조2)

-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분장사무 삭제

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국 단위 한시기구였던 혁신도시관리본부를 과 단위 상시기구로 하여 정부부지사 직속으로 두도록 직제를 조정하며, 분장사무 제13조2의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분장사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.

붙임 :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